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발의년월일 : 1996. 12.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 제안이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1.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내무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삽입하고
2.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중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을 "충청북도개발사업소"로 명칭 변경

□ 참고자료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2. 충청북도 개발사업소조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3호가목중 "내무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삽입하고
나목중 "내무" 다음에 "문화관광"을 삽입하며,
6호가목중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충청북도개발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업경제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

제6조중 제10호 "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0조중제4호 "관광의 진흥"을 삭제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12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육성
2. 문화재보존관리
3. 체육진흥 및 청소년관련업무
4.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
5. 관광지도 및 관광지개발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충청북도청내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수립추진
2. 오송역(경부호남고속전철)설치
3.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4. 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
5. 월드컵종합타운건설
6. 택지개발사업
7. 산업단지조성사업
8.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9.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 폐지하며,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조례1793호 1989. 7. 28)와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조례제2016호 93. 2. 19)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조례에 의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업무와 시설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가 이를 승계한다